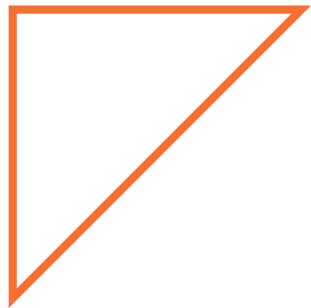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A Study on global game policies and laws

20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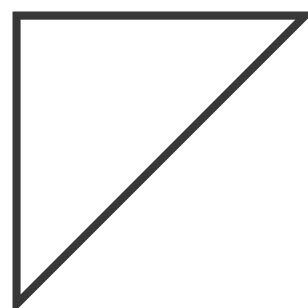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A Study on global game policies and laws

20

22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사)한국게임산업협회가 협업, 공동발주한 연구입니다.

제출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연구/조사기관: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연구/조사책임자: 김태균 변호사

요 약 문

게임산업은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콘텐츠 산업이다. 한국 게임은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북미, 유럽, 중동 등 전세계로 수출 시장을 넓히고 있다.

그런데 게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결제, 환불, 미성년자인 이용자와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 등급분류, 본인인증, 약관,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쟁점이 있다. 특히 최근 메타버스, NFT 등이 게임에 접목되고 있고 이러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각 나라별로 관련 법률이나 규제, 정책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국의 규제, 법률, 정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게임 수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 11개국의 게임 관련 규제, 법령을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UAE, 요르단, 이라크의 경우 청약철회나 환불에 관한 절차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는 당사자끼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확인하였다. 튀르키예나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상품에 대하여 청약철회나 환불을 할 수 없으나, 말레이시아, 이집트(단 디지털 제품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 없음), 카타르, 쿠웨이트(사용하지 않았어야 함)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환불 권리가 허용되고 있다.

성년 기준은 카타르,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튀르키예가 18세, 쿠웨이트, 이집트, UAE, 인도네시아가 21세였으며, 조사 대상 국가 모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말레이시아는 미성년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이 무효이며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도 없다고 한다.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이라크, 이집트는 게임 서비스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튀르키예(물리적인 매체로 판매되는 경우에 한하며, 온라인/모바일 게임은 제외), UAE, 사우디 아라비아(단 외국 사업자가 앱스토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모바일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함), 요르단(단 온라인/모바일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하는 경우도 많다고 함), 카타르(외국 사업자가 온라인/모바일로 제공하는 게임은 실무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다고 함), 쿠웨이트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할 경우 형사처벌되는 국가는 없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아직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들도 있었으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없었다.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사우디 아라비아(2023. 3. 발효, 5년의 유예기간 이후 효력 발생), 이집트(executive regulation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음)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국내 대리인 지정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요르단, 이집트(면허를 취득해야 함), 카타르는 결제시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고, 말레이시아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제하고 있었다.

게임 서비스를 위해 현지에 서버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나라는 없었다. 단 파키스탄의 경우 파키스탄에서 광범위한 상업적 활동이 동반되면 현지 사무소를 설립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요르단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하나 외국 회사들은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활동을 하는 것이 관행이라 하고 쿠웨이트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하나 쿠웨이트 대리인 또는 유통업자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 본 보고서는 2022년 기준으로 조사된 것으로 각 국가의 법령 개정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I. 결제 및 환불 관련

1. 결제수단	87
2. 표시광고	90
3. 청약철회	94
4. 환불	95
5. 미성년자 결제	96
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98

II. 등급분류

1. 등급심의	104
2. 등급분류 사후관리	107
3. 확률형 아이템	109
4. 광고관련	113

III.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15
-----------------------	-----

IV. 약관

1. 약관 관련	119
----------------	-----

V. 개인정보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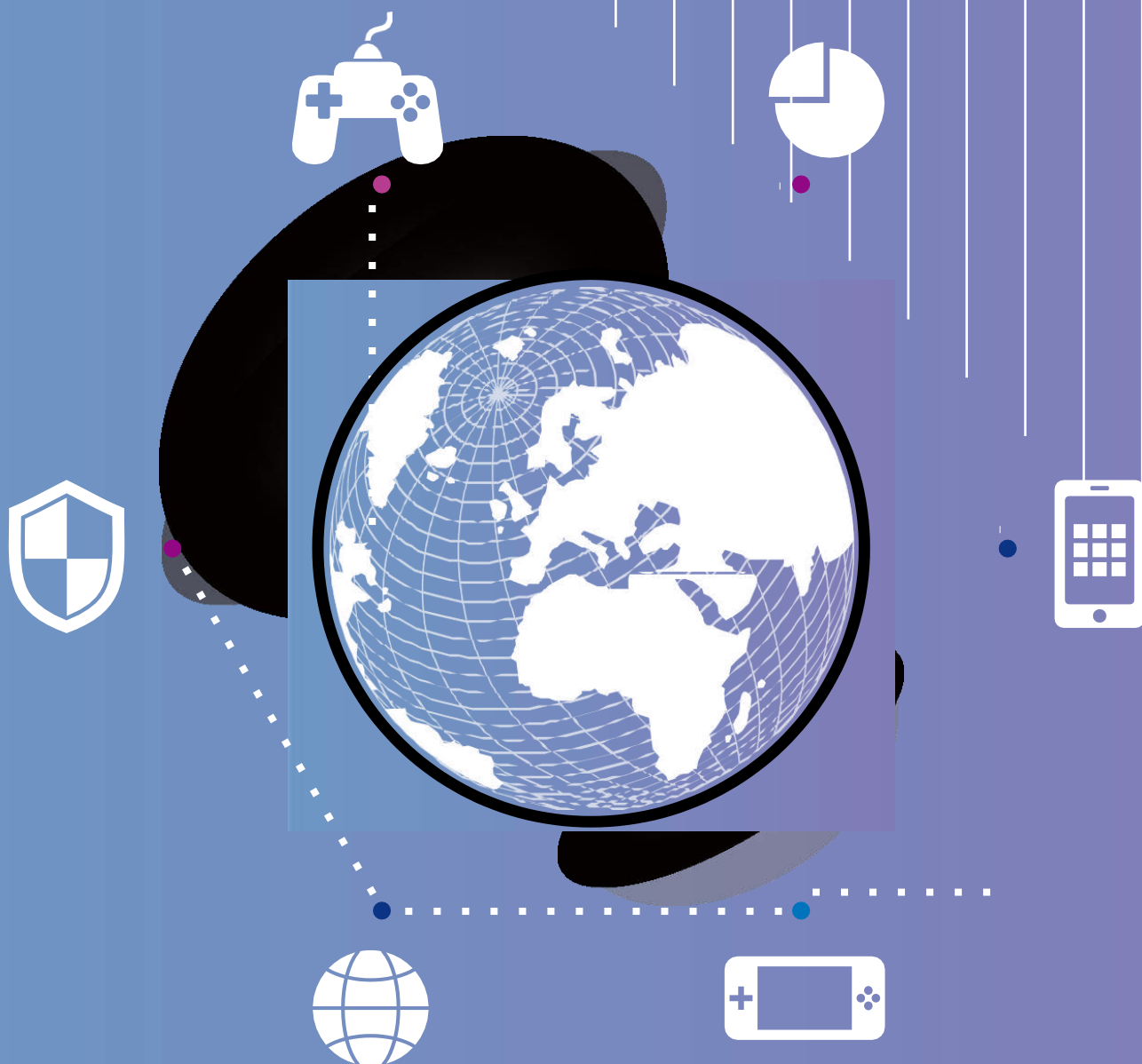
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125
2. 개인정보 처리	130
3. 개인정보보호.....	135

VI. 기타 분류

1. 게임 관련 법령/규정	140
2. 경품 이 벤 트	141
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141
4. 외국인 투자 제한.....	142
5. 기타	14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튀르키예



1. 결제 및 환불 관련

1. 결제수단

1-1. 대금 지급 방법

- 질문: 전자상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보안 유지 및 청약 고지 / 확인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4조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 및 중개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규정(“전자상거래 규정”) 제9조
- 부연 설명: 전자상거래법 제4조에 따라,
 - a) 서비스 제공자는 주문을 확인하는 동안 및 결제 정보가 입력되기 전에 지불되어야 할 총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 조건이 구매자에게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해야 함. 결제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중개서비스 제공자/서비스 제공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b) 서비스 제공자는 주문 접수와 확인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지체없이 구매자에게 알려야 함.

서비스 제공자는 주문 전 데이터 입력 오류를 식별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접근성 있는 기술적 수단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함. 또한 물리적 또는 전자적 환경에서 구매자에게 이용약관을 통지해야 함.

고객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상세 설명은 “정보 제공” 섹션 참조.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및 보안의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 및 중개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음. 그러나 이 부분 의무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폐지되었음.

튀르키예 법률 하에서 결제 서비스는 허가가 요구되는 규제 대상 금융 서비스이므로 튀르키예에서 운영이 허가된 은행이나 튀르키예에서 허가 받은 전자화폐 발행자, 튀르키예에서 허가 받은 결제기관(통칭 “결제 서비스업체”)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튀르키예 결제 서비스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제 서비스업체는 엄격한 감독을 받으며 거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의무가 부과되며, 은행업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대상 활동으로 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다양한 의무와 요구 사항이 있음.

1-2. 포인트/사이버 캐시

- 질문: 게임 내 사용 가능한 포인트나 사이버 캐시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전자화폐 및 암호화 자산이 이 질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전자화폐는

주로 지불 및 증권 결제 시스템, 지불 서비스 및 전자화폐 기관에 관한 법률 제6493호, 지불 서비스 및 전자화폐 발행 및 지불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통칭하여 “지불 서비스 법”)에 따라 규제됨. 이는 전자화폐 발행자가 자금을 수령할 때 발행되고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법률에 정의된 결제 거래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며 발행자 이외의 제3자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로 정의됨. 원칙적으로 허가 받은 법인만이 튀르키예에서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나, 발행자의 자체 네트워크나 제한된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 위해 발행되거나, 한정된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발행된 결제 수단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제한적 범위의 서비스/상품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는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고 그러한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튀르키예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일반적으로 in-game points는 위에서 살펴본 전자화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in-game points는 KCCA에 예치된 자금이나 명목화폐와 교환하여 발행되지 않으므로 그 발행을 위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또한 게임 내 지불 수단인 사이버 캐시의 경우 그 세부 사항(예: 게임 내 지불 수단을 발행하고 수령하는 당사자가 동일한지 여부, 발행자의 자체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지, 아니면 제한된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지 여부, 그리고 위에 명시된 전자화폐 정의의 요소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자화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승인되지 않은 전자화폐를 무단으로 발행하는 경우, 전자화폐 관련 결제 서비스에 관여한 회사의 임원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0일 이하의 징역에 상응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튀르키예 형법 제52조에 따라 선고일에 금액으로 환산되며, 현재 1일당 20TRY에서 100TRY의 범위에서 환산됨).

반면에 암호화 자산에는 단일 규정이 있음. 이 규정에서 암호화 자산은 (i) 분산 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가상으로 생성되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되며, (ii) 법정통화, 등록 화폐, 전자 화폐(“전자 화폐”), 결제 수단 또는 자본시장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 자산으로 정의됨. 이 규정에 따라,

가. 튀르키예에서 암호화 자산은 직간접적인 결제에 사용될 수 없음(즉,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나. 튀르키예 결제 서비스업체는 (i) 결제 서비스 제공 및 전자화폐 발행을 위해 암호화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없으며, (ii)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다. 튀르키예 결제 서비스 및 전자화폐 기관은 (i) 암호화 자산에 관한 거래, 보관, 이전 또는 발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플랫폼”)으로 자금의 이체 및 (ii) 이러한 플랫폼에서 자금의 이체를 중개할 수 없음.

튀르키예

암호화 자산 및 암호화 자산 관련 서비스, 플랫폼 및 기타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자(공탁소 등)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법안 초안(“초안”)도 있음.

1-3. 사이버 캐시의 상사시효

- 질문: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구매한 게임 내 특정 유료 캐시나 사이버 캐시에 대한 기한에 대해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 관련 법률: 튀르키예 의무법 제6098호(“TCO”) 제146조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502호(“소비자보호법”) 제12조 및 제16조

- 부연설명: 1) 게임 서비스 내 포인트/사이버 캐시 유효기간에 대한 특정 규정은 없음.

2) TCO 제146조에 따라 튀르키예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청구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또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명시되어 있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률 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더 긴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상품이 소비자에게 인도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추후에 그 하자가 밝혀진 경우라도 동일함. 단, 중대한 과실 또는 사기에 의하여 하자가 은폐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 표시광고

2-1. 표시광고(정보제공)

- 질문: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관련 법률이 있는지.
-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전자상거래 규정 제7조 및 원격판매 규정 제5조
- 부연 설명: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적 방식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를 통한 계약 체결 전에 다음을 제공해야 함.

가. 구매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신 소개 정보

나. 계약 성립을 위해 따라야 할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정보

다.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 내용을 보관할지 여부, 구매자가 추후에 이 계약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접근 가능 기간에 대한 정보

라. 데이터 입력 오류를 명확하고 쉽게 식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에 대한 정보

마. 적용 가능한 기밀유지 규칙 및 대안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있는 경우)에 대한 정보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소속된 직업 관련 협회⁹(있는 경우), 직업과 관련된 행동 규칙 및 이에 전자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원격판매 규정에 따라 원격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적절한 방식으로 다음 정보(예비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해야 함.

- 판매자/제공자의 이름, 직위, 전체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세부 정보
- 소비자가 불만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연락처 정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주요 특성
- 디지털 콘텐츠와 상호 운용이 가능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 모든 세금을 포함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가격(튀르키예 리라로 표시)

⁹ ‘Professional chamber’: 상업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자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전문적인 단체들로 구성된 협회를 의미함. 예컨대 상인은 상업회의소에, 기업가는 공업회의소에 각 등록하여야 함

- 배송 비용(있는 경우)
- 결제, 배송 및 이행에 대한 조건
-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 및 판매자가 반품을 위해 지정한 운송업체에 대한 정보(있는 경우)
- 철회를 통보할 명확한 주소,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정보
-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철회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철회권을 상실하게 되는 조건에 대한 정보
-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가 결제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보증금 또는 기타 재정 보증(있는 경우) 및 그 조건
- 소비자의 불만이나 클레임이 소비자 중재위원회 또는 소비자 법원(the consumer court)에 제출될 수 있다는 정보

2-2. 표시광고(광고시 배제해야 될 내용)

- 질문: 소비자의 오인을 막고 소비자 기만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가 절대 기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광고 및 표시 문구 등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법 제61조, 상업 광고 및 부당한 상거래 관행에 관한 규정 제6, 7, 13, 22조(이하 “**광고 규정**”), 상업 광고 및 불법 상거래 관행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지침(“**지침**”), 복권 및 비현금성 경품 추첨에 관한 규정 제15조(“**복권 규정**”)
- 부연 설명: 마케팅 활동은 소비자보호법 및 광고 규정을 준수하여 하여야 함.

광고 규정 제7조에 따라 광고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정확하고 공정해야 한다.
- 불공정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 고객의 경험 부족과 지식 부족을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일반 소비자의 인식 수준과 그러한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 직간접적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광고물에는 소비자의 오해와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문구(아래 설명 참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 정보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튀르키예

- 상품의 구조, 구성, 공급, 혜택, 위험, 부속품, 생산 방법, 생산 일자, 목적 적합성, 용도, 경제적 수명, 사용 영역, 기술적 특성, 효율성 및 성능, 수량, 원산지 및 환경에 대한 영향
- 서비스의 특징
-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상호, 비지니스명, 지위 및 권한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 및 소비자가 결제할 실제 총 금액
- 인도, 교체, 철회, 보증, 애프터 서비스, 예비 부품(spare parts) 또는 유지 보수 및 수리 조건
-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 공식 인증 또는 승인, 상패, 수상, 수료증 및 이와 유사한 문서
- 사회적 책임
- 소비자의 법적 권리와 소비자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

광고 규정 제13조에 따라 광고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격이 포함될 경우 세금을 포함한 총 금액이 표기되어야 함. 금융대출 등 소비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총 금액의 산출 방법을 제시해야 함. 해외에서 수행되는 패키지 여행, 교육, 교통 및 숙박 서비스 이외의 모든 가격은 튀르키예 리라로 표시되어야 함. (i)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종속되거나, (ii)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조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약속된 경우, 소비자가 충족해야 될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함. 할부광고에서 광고주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총 금액 및 할부횟수를 할부금액과 함께 들을 수 있거나 읽을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함.

또한 특정 콘텐츠(주류, 의약품, 중매, 도박, 복권 및 스포츠 베팅, 성인용 상품(에로 및 성적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광고 규정 제22조에 따라 마치 광고가 아닌 것처럼 은밀하게 슬쩍 하는 광고(또는 유사광고, surreptitious advertising)는 금지됨.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공유하는 콘텐츠의 경우, 형식과 게시 플랫폼과 관계없이 소비자는 관련 콘텐츠가 광고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지침에 따라 인플루언서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할 때에는 경제적 이익 유무와 무관하게 특정 해시태그(예: 영어로 “Sponsorship“, “Collaboration“, “Advertisement“, “Marketing“으로 번역)를 반드시 사용해야 함.

또한 복권 규정 제15조에 따라 복권에 관한 모든 판촉, 발표 및 광고에는

튀르키예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GDNL(복권위원회)에서 부여한 허가에 대한 정보(예: 날짜, 발급번호)
- 만 18세 미만은 복권 및 추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에도 경품을 수령할 수 없음
- 경품에 포함된 것 이외의 모든 세금 또는 기타 의무는 당첨자가 지불
- 복권/프로모션 기간 안내(시작일 및 종료일)
- 참가 조건(예: 개인은 게임 플레이어여야 하며 18세 이상이어야 함).
- 경품에 대한 정보(예: 제공되는 경품의 수, 종류, 모델, 브랜드 등)
- 추첨일, 당첨자 통보 방식 및 경품 배송 방식에 대한 정보
- GDNL에 대한 15일 간의 복권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정보
- GDNL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3. 청약철회

3-1. 청약철회

- 질문: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 및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이나 기간 등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디지털 상품(인게임 아이템 등)도 청약철회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청약철회 시 환급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 관련 법률: 원격판매 규정 제9, 12, 15조, 가입약관 규정
- 부연 설명: 1-3) 철회권에 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떠한 위약금도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음. 소비자가 철회권에 대해 적절히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14일의 기간에 구속되지 않음.

- 판매자 또는 공급자는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은 모든 대금을 환불해야 함.

원격판매 규정 제12/5조에 따라, 예비정보에 판매자 지정 운송업체가 반품하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판매자가 지정한 운송업체가 아닌 다른 운송업체가 반품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즉, 비디지털 상품)을 반품하는 비용을 부담함(규정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원격판매 규정 제15조에 따라, 소비자는 전자적 환경에서 즉시 수행되는 서비스 또는 소비자에게 즉시 배송되는 무형의 상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에 대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인게임 아이템이나 유사한 디지털 상품이 이 범위에 속할 수 있음(다만,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단, 원격판매 규정 외에 서비스가 가입(구독) 기반으로 제공되는 경우 가입약관 규정의 적용도 받음.

이 경우 가입약관규정 제22조에 따라,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가입 약관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소비자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는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정된 약정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정된 약정의 경우, 소비자는 해지 사유 및 위약금에 대한 의무 없이 약정을 해지할 권리가 있음. 따라서 무기한 약정 가입 및 2년 약정 가입은 해지 사유나 위약금에 대한 의무 없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이 경우 소비자는 서면 또는 내구성 있는 매체(durable media)를 통해 계약을 해지함.

가입약관규정 제24조에 따라, 가입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의 해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의 나머지를 환불해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보험금, 예치금 또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지 않고 환불해야 함.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의 환불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가입약관규정은 서비스가 회원 가입 기반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약정은 원격판매규정이 적용됨.

가입약관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소비자보호법 제77조에 따라 1회 위반당 TRY 615(약 USD 33)의 과태료가 부과됨.

4. 환불

4-1. 환불

- 질문: 이용자가 회원탈퇴 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상 잔여 재화(Coin류 or 다이아류)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시의 환불(환불대상이 되는 잔여재화 및 상품의 범위와 환불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환불 과정과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 관련 법률: 원격판매 규정 제12조

- 부연 설명: 1) 위 “3-1 청약철회”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소비자는 전자적 환경에서 즉시 수행되는 서비스 또는 소비자에게 즉시 전달되는 무형의 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음. 단, 서비스 제공자가 잔여 가상화폐에 대한 철회권 행사를 수락하는 경우,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철회권 행사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판매자의 환불 의무를 준수해야 함(즉, 원격판매 규정 제12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소비자의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판매자 또는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대한 서비스 제공/상품 배송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된 모든 금액을 환불할 의무가 있음). 이 요구 사항 외에 게임 내 구매에 대한 구매 항목 환불에 대한 특정 규정은 없음.

단, 원격판매 규정 제6/1-h조에 따라 철회권이 행사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계약 체결 이전에 예비정보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함. 즉, 서비스제공자는 회원 탈퇴 시 잔여 가상화폐가 환불되지 않음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야 함.

2) 서비스 종료 시 환불에 대한 특정 규정은 없음. 계약 해지 시 소비자의 모든 구매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환불할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서비스 계약에 따름.

튀르키예

3) 모든 환불은 소비자가 구매 당시 사용한 결제 방식에 따라 전액 환불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부담할 비용이나 책임은 없음. 따라서 원격판매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의 환불과 관련된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부과될 수 없음.

다만 비디지털 상품에 관하여는, 원격판매규정 제12/5조에 따라, 사전 안내를 통해 판매자가 지정한 운송업체 또는 판매자가 지정한 운송업체 이외의 운송업체를 통해 반품한 경우 상품(비디지털 상품)의 반품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소비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함(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때 반품 비용은 배송비를 초과할 수 없음. 이 조항은 2024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이 있으며 그때까지 판매자는 소비자가 사전 안내에서 판매자가 제공한 운송업체가 아닌 다른 운송업체를 통해 반품하지 않는 한 반품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함.

4-2. 과오납금 환불

● 질문: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튀르키예 의무법의 일반 조항에서는 의지와 의사표시 사이의 의도하지 않은 불일치를 “실수(mistake)”로 간주함. 계약 체결 시 근본적 실수를 한 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음. 실수가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에 구속되어야 함. 근본적 실수에는 계약의 성격, 계약 대상 금액, 계약 내용, 계약의 주체 및 필수 요소에 대한 실수가 포함됨. 따라서 각 사례의 상황별로, 주문과 관련하여 근본적 실수가 있는 계약의 경우,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그 실수가 본질적 실수가 아니고 계약의 동기에 실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유효성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초과 또는 착오 납부가 발생한 경우, 이론적으로 소비자는 튀르키예 의무법의 규정에 따라 실수가 있다고 주장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음. “취소” 및 “환불” 섹션도 참조.

5. 미성년자 결제

5-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권한(결제 관련)

● 질문: 미성년자가 결제 등을 이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튀르키예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 관련 법률: 튀르키예 민법(“TCC”) 제16조
- 부연 설명: 튀르키예 민법은 18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18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간주함.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적 거래를 수행하거나 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법적 능력이 없음. 만 18세 미만 개인의 법적 거래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거래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음. 튀르키예 민법은 법정대리인 동의의 형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메일 주소로 온라인 동의서 양식의 링크를 발송하거나 확인 이메일을 보내 영어로 작성된 동의서를 받는 것은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것이. 그러나 명시적인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동의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튀르키예어로 동의서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됨.

한편 튀르키예 민법은 동의가 옵트인인지 옵트아웃인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 이메일을 보내는 것(옵트아웃)이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음.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관점에서 튀르키예의 데이터 보호 당국은 ‘옵트인’ 동의 방식을 요구함. 이를 고려할 때 동의(옵트인)를 제공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로 링크를 보내는 것은 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됨.

단, 미성년자가 거래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돈을 쓸 수 있도록 준다면 사전에 거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래 목록이 없으므로 사례별 분석이 필요함.

위의 내용 외에도 게임 내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소지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함. 단, 튀르키예 은행 관련법에 따라 카드 발급 금융기관은 연결 카드(주 카드 소지자의 신용카드와 연결됨)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결 카드는 법적 연령에 이르지 못한 개인(즉, 18세 미만)의 이름으로 발급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18세 미만의 개인은 부모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신용카드를 가질 수 있음. 단, 주 카드 소지자는 연결 카드의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음.

5-2. 미성년자 청약 철회

- 질문: 미성년자가 계약 또는 결제 등의 행위 진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안내해야 하는지. 이외 관련 규정이 있는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의 유무

- 부연 설명: 1. 미성년자 거래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위 5-1 부분 참조. 소비자법의 관점에서 이용자에게 미성년자일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고지하는 것이 권장됨.
2. 아동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답변은 튀르키예 데이터 보호 당국의 권장사항 참조(IV. 1-3 아동 개인정보 수집 부분).

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6-1. 전자문서 활용

- 질문: 전자문서의 활용 범위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법 제8조와 제11조 및 소비자보호법 제3조와 제4조, 원격판매 규정 제4조 및 제6조
- 부연 설명: 전자상거래법에는 구매자 측의 전자문서 사용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단, 서비스 제공자는 구매자에게 주문 전 데이터 입력 오류를 식별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접근성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해야 함. 구매자에게 이용약관을 물리적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통지해야 함.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 확인서를 보내고 거래의 전자 기록을 저장함.
또한 소비자보호법 및 원격판매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계약 및 정보는 영구 데이터 저장매체에 저장될 수 있음. 영구 데이터 저장매체는 소비자가 보내거나 소비자에게 보낸 정보가 변경되지 않고 기록 및 복사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또는 매체를 말하는데, 문자 메시지, 전자메일, 인터넷, 디스크, CD, DVD, 메모리 카드 및 이와 유사한 수단 또는 매체로서 소비자가 해당 정보의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접근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6-2. 거래기록 보존

- 질문: 전자상거래의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해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3항
- 부연 설명: 본건 조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거래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임. 그러나 2023.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법 범위 내의 정보, 문서, 장부,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 거래기록(transaction record)에는 소비자와 체결한 약정, 당사자 간의 통지, 지불 내역, 배송 기록(비디지털 상품의 경우) 및 송장과 같은 소비자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포함함.

또한 원격판매 규정 제20조에서는 소비자와의 거래에 관한 철회권, 통지, 배송 및 기타 사항에 관한 보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자상거래법은 구체적인 위반 사항에 따라 상이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6-3. 조작 실수 방지

- 질문: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한국의 경우 소비자가 결제를 하기 직전에 팝업으로 결제 내역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 관련 법률: 원격판매 규정 제5, 8조
- 부연 설명: 원격판매 규정 제8조에 따라 판매자 또는 공급자는 주문에 대한 결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주문에 구속되지 않음.

원격판매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 구매를 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명확하고 이해 가능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받아야 함.

- 모든 세금 및 배송 비용(있는 경우)을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금액.(튀르키예 리라 표시)
- 결제, 배송 및 이행에 대한 조건.
- 일반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원격통신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안이나 가격이 유효한 기간.

또한 배송에 제약이 있는지 여부와 허용되는 결제 방법에 대한 정보도 명시되어야 함.

6-4. 웹사이트, 사이버몰, 인게임 앱 신원표시

- 질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 몰에 어떠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 규정 제5조
- 부연 설명: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상거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다음 각호의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함.

가. 등록 전자메일(KEP) 주소, 통지에 적합한 전자메일 주소 및 전화 번호, 업체명 또는 등록 상표명(있는 경우)

나. 소속된 직업 관련 협회(있는 경우), 소속된 부문별 기관, 협회 또는 기관의

관련 규칙 및 이에 전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다. 상호, MERSIS 번호(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번호 비슷한 것) 및 본사 주소(상인(merchant¹⁰) 경우)

라. 성명, 납세자식별번호 및 본사 주소(소상인(trademan¹¹)인 경우)

마. 성명 및 성 또는 직위, 본사 주소, 통지에 적합한 등록 전자메일 주소, 전자메일 주소 및 전화 번호(상인 또는 소상인이 아닌 경우)

6-5. 청약 확인

- 질문: 전자 거래 이후 소비자에게 청약의 정보를 고지하고 수신확인을 받는 등의 기본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 관련 법률: 원격판매 규정 제5조
가입약관 규정 제6조
- 부연 설명: 원격판매 규정 5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 구매를 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명확하고 이해 가능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 판매자/제공자의 이름, 직위, 전체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세부 정보.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주요 특성.
 - 모든 세금 및 배송 비용(있는 경우)을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금액(튀르키예 리라 표시)
 - 결제, 배송 및 이행에 대한 조건.
 - 철회권 행사를 위한 조건 및 절차(있는 경우)
 - 일반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원격통신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 디지털 콘텐츠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안이나 가격이 유효한 기간.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영구적 또는 주기적 제공을 계획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의 최소 기간.

¹⁰ 상인(merchant)은 소상인의 기업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 부분적으로라도 자본을 기반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상업 기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함.

¹¹ 소상인(trademan)은 (i) 자본과 육체 노동을 기반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ii) 간편 절차에 따라 과세되며, (iii) 수입이 상인(Merchant)에 해당할 만큼의 금액이 아닌 자를 말함.

- 무기한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진 계약에 대한 해지 조항.
- 소비자 불만 또는 클레임은, 금전적 가치가 통상부가 정한 한도 미만인 경우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도시 또는 소비자가 거주하는 도시 국가에 위치한 소비자 중재 위원회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는 정보.

또한 판매자/제공자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원격 통신 도구에 따라 사전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단,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입(구독)형 게임/서비스인 경우에는 가입약관 규정 제6조에 따라 소비자와 가입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관에는 필수 콘텐츠 요건(예컨대 판매자에 대한 정보, 약정 이행일, 서비스/상품의 총 가격 및 불이행결과)이 포함되어야 함.

6-6. 휴업기간 업무 처리

- 질문: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청약철회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 관련 법률: 원격판매 규정 제5조
- 부연 설명: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특정 규정은 없으나 원격판매 규정 제5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해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공개 주소, 전화번호 및 유사 연락처 정보.
- 소비자가 판매자 또는 제공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판매자 또는 제공자의 계정 또는 대리인 신원 및 주소.
- 소비자가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다른 연락처가 있는 경우 추가 채널에 대한 정보.
-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불만 처리 방식에 대한 정보.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규칙은 없지만 법률은 서비스 제공자가 요청/불만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 수단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됨.

6-7. 결제한도

- 질문: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 또는 연령 별 결제 한도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튀르키예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이러한 제한사항이나 월별 지급조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러한 이행조건을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전달해야 함.

6-8. 추천 광고

- 질문: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및 게재 관련 규정이 있는지?
-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법 및 지침
- 부연 설명: 원칙적으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장하고 소비자의 지식 부족을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에 따라, 통상부의 광고위원회는 은닉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지침을 발표하였음. 이 지침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은닉 마케팅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플루언서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할 때에는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특정 해시태그(영어로 “Sponsorship“, “Collaboration“, “Advertisement“, “Marketing“으로 번역)를 사용할 것을 요구함. 지침은 소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콘텐츠 및 플랫폼의 유형에 따라 (i) 비디오 공유 플랫폼, (ii) 사진 및 메시지 공유 플랫폼, (iii) 팟캐스트 공유 플랫폼, (iv) 제한된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플랫폼 등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플랫폼에 대해 각기 다른 광고 규칙을 적용함.

II. 등급분류

튀르키예

1. 등급심의

1-1. 등급분류 필요여부 (사전 및 사후)

- 질문: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서비스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서비스 이후에 심의를 받아도 되는지?
- 관련 법률: 영화의 평가 및 분류에 관한 절차 및 원칙에 관한 규정
- 부연 설명: 튀르키예의 등급 체계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설립 및 방송 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6112호에 따라 규제되며 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예정된 등급 요건이 있음. 그러나, 미디어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에 디지털 게임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등급 체계는 게임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단, 영화 등록 절차를 규제하는 법률이 있으며 이는 튀르키예에서 제공되는 게임에도 적용됨. 영화의 평가 및 분류에 관한 절차 및 원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출시되는 컴퓨터 게임은 문화관광부 산하의 평가분류 위원회(“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함. 이 등록 절차의 전제 조건으로서 컴퓨터 게임도 등급을 받아야 함. 컴퓨터 게임에 대한 등록 요건이 있지만 이 등록 요건은 물리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게임에 적용되며 온라인 플랫폼(자체 웹사이트 또는 애플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게임에는 등록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또한 위원회 웹사이트에는 등록된 게임을 검색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 현지 로펌이 high-level로 검색해 본 결과 등록된 게임은 주로 물리적 복사본을 통해 판매되는 콘솔 및 PC 게임인 것을 확인했으며, 관련 규제기간에 문의해본 결과 물리적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게임은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음.

분류된 게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튀르키예어)는 [여기](#)¹²에서 확인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자는 이스탄불 저작권 및 영화 감독국에 문의하여 분류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음. +90 (212) 527 00 53/54로 전화하거나 siniflandirma@ktb.gov.tr로 이메일을 보내면 됨.

한편 영화 등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TRY 90,000(약 USD 4,8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이 금액은 예년의 재평가 비율에 근거하여 추산된 비공식 결과임).

1-2. 등급분류 주체

- 질문: 등급분류 심의 담당 기관은 무엇인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 심의 담당 기관의 운영주체는 어디인지?(민간 주도/정부 주도의 여부)
- 관련 법률: 영화의 평가 및 분류에 관한 절차 및 원칙에 관한 규정 제4조

¹² <https://filmsiniflandirma.ktb.gov.tr/Home/Listing?paging=4&categoryId=4>

튀르키예

- 부연 설명: 문화관광부 산하 업무부서인 평가분류 위원회에서 담당함.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 질문: PC, 모바일, 콘솔 등 어떠한 게임 종류가 등급심의를 받는 대상이 되는지, 디지털 게임물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Closed Beta 등 시험용 게임물 또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메타버스 플랫폼 및 채팅 플랫폼에 추가된 게임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위 1-1 “등급분류 필요여부” 부분 참조).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 질문: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와 같이 어떻게 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 등급 분류의 기준은 무엇인지?
- 관련 법률: 영화의 평가 및 분류에 관한 절차 및 원칙에 관한 규정 별표-1
-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 컴퓨터 게임은 마약, 저속한 속어, 성적/과도한 노출, 폭력/공포 등 부정적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평가 및 분류됨. 분류에는 연령제한 기호(예: 6/10/13/16/18세 이상의 시청자용) 및 가족 모니터링용 기호(예: 6/10/13 미만의 시청자는 가족과 함께 시청 가능)가 포함됨.

튀르키예

1-5. 해외사업자 등급분류신청 가능 여부

- 질문: 해당 국가의 별도의 사무실 설립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 부연 설명: 등록은 현지 법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음. 따라서 등급을 받으려면 현지 법인이 필요함. 위원회와의 구두 협의에 따라 현지 법인이 게임 회사의 일부나 게임 수입자가 될 수 있다고 이해됨.

1-6. 등급분류 신청절차 및 필요자료

- 질문: 등급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나 서류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또한 그 절차나 서류는 무엇인지
-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

(참고용) 컴퓨터 게임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등록이 이루어지고 여러 서류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함.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의 대략적 목록은 아래와 같음:

- 게임사와 튀르키예 법인 간의 계약서(지식재산권 이전 관련)
- 세관 서류
- 위임장
- 서명 회람
- 예비청원서 및 확약서
- 등록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에 덧붙여, 평가분류 위원회는 분류 대상 컴퓨터 게임을 확인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하며, 등급과 분류는 같은 날에 완료되어야 함.

1-7. 등급분류 처리 기간 및 비용

- 질문: 등급 심의에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그 비용은 얼마인지?
-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

(참고용) 위원회의 구두 회신에 따르면 컴퓨터 게임의 경우 등록/평가 프로세스에는 약 10일이 소요됨. 등급을 받는 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은 없으나 등록비가 있으며 2022년에는 TRY 1,669(약 USD 90)로 예상됨.

2. 등급분류 사후관리

2-1. 등급분류의 거부

- 질문: 어떤 경우에 등급을 받을 수 없는지, 등급분류를 거부당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

(참고용) 법령에 특정한 사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현지 로펌은 위원회로부터 게임의 행위가 지나치게 부정적 (마약, 저속한 속어, 성적/과도한 노출, 폭력/공포 등)이라고 판명될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고 구두로 확인을 받았다고 함. 다만 현지 로펌은 법률에서 제시되는 지침이 제한적이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고 함.

2-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사항, 방법

- 질문 : 등급을 받은 후 해당 등급을 웹사이트, 인게임, 물리적 패키지 등에 어떻게 어디에 표기해야 하는지?
- 관련 법률: 영화의 평가 및 분류에 관한 절차 및 원칙에 관한 규정 제12조
-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

(참고용) 컴퓨터 게임과 관련하여, 영화의 평가 및 분류에 관한 절차 및 원칙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르면 게임의 하드카피에 쉽게 볼 수 있게 등급이 표시되어야 함.

2-3. 등급분류 효력

- 질문: 등급분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처벌 조항이 있는지?
- 관련 법률: 영화의 평가, 분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

(참고용)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게임 배포 중단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튀르키예

2-4.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 질문: 등급 심의 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게임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

(참고용) 현지 로펌이 위원회로부터 받은 구두 회신에 따르면 게임을 수정하는 경우 콘텐츠가 새로운 작업으로 간주되어 등급을 갱신해야 함.

2-5. 등급의 조정

- 질문: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받은 등급이 변경되는지?
-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

(참고용) 디지털 게임의 등급/분류는 출시 전에 한 번 평가되며, 본 법인이 위원회로부터 받은 구두 회신에 따르면 해당 게임이 그 특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갱신이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2-6. 등급분류의 취소

- 질문: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받은 등급이 취소되는지?
-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

(참고용) 현지 로펌이 위원회로부터 받은 구두 회신에 따르면 거짓 정보, 문서 및 진술로 위원회를 오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등급/분류는 취소의 대상이 아님.

2-7.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

- 질문: 등급분류를 받은 후 어느 정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

(참고용) 현지 로펌이 위원회로부터 받은 구두 회신에 따르면 등급은 현지 법인 및 게임 제작자와의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함.

3. 확률형 아이템

3-1. 판매 가능 여부

- 질문: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 관련 법률: 광고 규정 제28조, 복권 규정
- 부연 설명: 아이템을 뽑는 loot box 기능에 우연적 요소가 있고(유일한 결정 요소는 아닐지라도) 플레이어가 이에 따른 보상으로 게임 내 가상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복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비현금성 경품이 달린 우연성 기반 활동은 복권 규정 및 복권위원회(“GDNL”) 감독의 범위에 속함. 이와 관련하여 비현금성 경품이 달린 우연성 기반 활동은 GDNL의 허가를 받아야만 함. 허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 벌금 및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이러한 사례에서 loot box를 통해 사용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우연적 요소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복권법은 튀르키예의 법인에 적용되므로 해외 법인은 이 법률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음. 또한, 신청 절차 자체는 지역 법인/개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외법인이 GDNL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튀르키예 법의 적용을 받는 튀르키예 거주자가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므로 GDNL이 loot box를 통해 아이템을 뽑는 기능에 대한 규제 리스크를 배제할 수는 없음.

단, 플랫폼의 인기도와 가시성에 따라 GDNL이 규제 할 위험성은 실제로 크지 않을 수 있음.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게임 내 loot box를 통해 아이템을 뽑는 기능에 대해 GDNL이 제재를 부과할 실질적인 리스크는 낮음. 이러한 리스크는 개인이 이벤트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이벤트 자체가 매우 인기를 얻어 GDNL의 관심을 끄는 경우 높아질 수 있을 것임.

또한, 확률형 아이템 판매는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자 중심 상거래 관행은 전문적 케어 요건(requirements of professional care)을 준수하지 않고 일반 소비자의 경제적 행동을 크게 왜곡하거나 크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불공정함. 소비자가 상거래 관행의 결과로 소비자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그렇지 않았다면 되지 않았을) 경제적 행동이 크게 왜곡된 것으로 인정됨. 예를 들어, loot box를 구매하여 획득할 수 없는 특정 캐릭터/보상이 loot box에 표시되는 경우, 이는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

3-2. 관련 규제

- 질문: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튀르키예

예시)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 킴플리트 가차, 강화형 콘텐츠 등

- 관련 법률: 광고 규정, 복권 규정
- 부연 설명: 광고 규정은 모든 상업 활동에 적용되며 복권 규정은 우연성 기반 요소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됨.

3-3. 준수 사항

- 질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판매 제한, 확률 공개, 내용정보표시 추가 등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 관련 법률: 광고 규정 제29조
- 부연 설명: 확률형 아이템 판매가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구성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loot box에 포함된 물건(즉, loot box 구매로 얻을 수 있는 보상)과 취득 확률에 대해 알려야 함.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loot box의 조건이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함.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복권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해석되는 경우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또한 일반적으로 현금 경품이 달린 우연성 기반 활동은 GDNL만 조직할 수 있음. 복권 규정 제8조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경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또한 튀르키예 광고 규정에 따라 수여되는 경품은 법률 조항이나 공공 질서를 침해(예: 무기, 담배 상품, 마약 등)해서는 안 됨. 좀더 상세히 보자면 이벤트 홍보(및 추첨 경품)에 다음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됨.

- 알코올성 음료 및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
- 담배 상품 및 담배 상품 사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
- 약물 또는 촉진 및 자극 물질
- 의약품, 의료 서비스
- 총
- 점성가, 역술가 서비스와 같은 신탁
- 중매(파트너 찾기를 위한 match making 서비스)
- 도박 카지노, 온라인 카지노 및 도박 활동을 조장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도박
- 포르노/음란물
- 성매매

튀르키예

- 낙태 및 모든 관련 서비스
- 법률 및 감사 서비스와 그 공급업체
- 세금 자문, 법률 자문, 의료 자문
- 스트립쇼 및 스트립 클럽
- 빠른 체중 감량 및 모든 관련 서비스 및 상품
- 해커 서비스
- 은닉 광고
- 복권 및 스포츠 베팅
- 성인용 상품(에로 및 성적인)

3-4. 위반 시 페널티

- 질문: 확률형 아이템이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지, 자율규제일 경우 별도 별칙이 있는지?
-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법 제77/13조, 국가복권령 제38조
- 부연 설명: 원칙적으로 복권 규정의 기반이 되는 복권시행령 위반 시 2백만 튀르키예리라의 과태료(공식 경고 후 불이행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2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과 최대 1천만 튀르키예 리라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재평가율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되고, 따라서 2022년 금액은 여기에 표기된 금액보다 높을 것임.

또한, 복권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예: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최자는 2년간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위반이 반복되면 2년의 기간이 2배로 연장됨.

앞서 본 바와 같이 복권법은 튀르키예의 법인에 적용되므로 해외 법인은 이 법률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음. 또한, 신청 절차 자체는 지역 법인/개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외법인이 GDNL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튀르키예 법의 적용을 받는 튀르키예 거주자가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므로 GDNL가 loot box 기능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만일 loot box가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으로 간주되는 경우 광고위원회는 최대 155,712 튀르키예리라(약 USD 8,400)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3-5. 자율규제

- 질문: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제도가 있는지?

튀르키예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소비자보호법의 일반 원칙(예: 투명성, 공정성)이 적용됨.

4. 광고관련

4-1.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표기 관련 표시의무

- 질문: 게임 광고 시 등급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예 : 영상 시작시 왼쪽 하단에 3초 이상 등급 표기), 광고에 포함할 수 없는 콘텐츠가 있는지
- 관련 법률: 광고 규정 제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 부연 설명: 1) 광고의 자막, 정적 텍스트 및 각주는 읽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속도와 크기여야 함. 또한 시각매체 및 인쇄매체 광고의 자막, 정적 텍스트 및 각주와 관련하여 텍스트 크기, 색상 및 길이 등 몇 가지 세부적 기술 규칙이 있음.

2) 게임광고에 특정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광고 규정 제5조에 따라 광고는 다음과 같아야 함.

- 공공 가치에 반하는 표현이나 이미지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 공중보건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 공공질서를 교란하거나 폭력 행위 및 불법적이거나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를 유발, 묵과, 조장, 지지하는 요소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 병자,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착취하는 표현이나 이미지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 언어, 인종, 피부색, 성별, 정치적 견해, 철학적 신념, 종교, 종파 및 유사 특성에 대한 학대, 착취, 편견 또는 차별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서는 안 된다.
-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과 관련된 표현이나 이미지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언급해서는 안 되며, 그 사람의 사유 재산을 상품이나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내거나 언급할 수 없다.
- 소비자의 두려움과 미신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대중에게 경각심을 주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질병, 부상 또는 유사한 상태와 관련된 표현이나 이미지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 안전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관행 및 상황에 대한 표현이나 설명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등급에 대한 설명은 “II. 등급분류” 파트 참조

III.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1. 본인인증/ID 생성

- 질문: 인터넷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운영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 본인인증 등을 요구하는 법령 혹은 자율규제가 있는지, 이용자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면 본인인증 도입/미도입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은행/결제 서비스 규정에 따른 규정은 있으나, 모바일 게임에서 사용자 식별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방법을 명시하는 규정은 없음.

1-2. 연령확인(미성년자 연령 확인)

- 질문: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혹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미성년자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1-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계약해지 관련)

- 질문: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위의 “미성년자 결제“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계약해지는 법적 거래이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 그러나 미성년자는 법적 후견인의 동의 없이 채무를 발생시킬 수 없음. 결국 계약해지가 미성년자 측의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음.

1-4.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 질문: 미성년자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의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튀르키예

- 부연 설명: 이용시간이나 결제 기록의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기존 규정은 없음.

1-5. 강제적 섯다운제

- 질문: 강제적 섯다운제 관련 규정이 있는지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모바일 게임에 적용되는 강제적 섯다운제(예컨대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밤 12시 이후에는 무조건 게임을 종료시키는 등)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러나 정당한 사유(유지보수, 운영상의 불편 등)로 인한 섯다운에 대해서는 아래 답변 부분 참조.

1-6. 선택적 섯다운제

- 질문: 선택적 섯다운제 관련 규정이 있는지
-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법 제6/2조
- 부연 설명: 소비자보호법 제6/2조에 따라 유지보수 또는 운영상의 문제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회피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음.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특정 시간에 자녀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게임사에 요청할 경우 게임사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는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섯다운을 시켜야 하는 규정은 없음.

1-7. 미성년자 정의

- 질문: 민법 상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청소년 보호법 상 미성년자의 연령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관련 법률: 튀르키예 민법(TCC) 제16조
- 부연 설명: 튀르키예 법에 따라 TCC는 18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18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간주함.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적 거래를 수행하거나 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법적 능력이 없음(“미성년자 결제“ 부분 참조).

1-8. 미성년자보호법

- 질문: 미성년자의 게임 서비스 이용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튀르키예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는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이 있는지?

- 관련 법률: 튀르키예 DPA 지침
- 부연 설명: 별도의 미성년자보호법은 없고,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튀르키예 정보기술통신 당국이 발행한 여러 지침이 있음¹³. 또한 튀르키예 데이터 보호 당국에서 아동의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발행한 지침도 있음. 예를 들어, 데이터 통제자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동에게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제공하고 데이터 최소화 원칙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해야 함.

¹³ <https://www.guvenliweb.org.tr/dokumanlar/rehberler?page=1>

Ⅳ. 약관

2. 약관

1-1. 이용약관

- 질문: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표준이용약관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표준이용약관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계약법, 민법 등 법률상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법 제5조, 소비자 계약의 부당한 조건에 관한 규정 제5조
- 부연 설명: 1) 게임 서비스에 대해 특별히 지정된 표준약관은 없음. 단,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관련된 튀르키예 데이터 보호 당국의 구체적 지침이 있음(예: 텍스트는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2) 게임 서비스에 대한 표준약관은 없으나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튀르키예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됨.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는 튀르키예 데이터보호법 제10조에 명시된 필수 요소(처리 목적, 법적 근거, 수신자, 데이터 주체의 권리 등)가 포함되어야 함. 또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아동이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광의적인 문구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IV. 개인정보보호 “2-3 개인정보 처리방침” 부분 참조.

3) 소비자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불공정 조건이란 소비자와 적절한 협의 없이 계약에 포함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정도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정직의 규칙을 위반하는 계약 조건을 말함.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의 불공정 조항은 무효임. 소비자계약의 불공정약관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약관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됨:
 - 계약발행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소비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또는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발행자의 법적 책임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약관
 - 계약발행자가 계약상 발생한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 소비자의 미수금을 계약발행자에 대한 기존 부채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계약발행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없애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관
 - 계약발행자는 스스로 정한 조건 하에서만 이행하는 반면, 소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약관
 - 소비자가 약정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발행자에게 부여하되, 계약발행자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유사한 보상을 부여하지 않는 약관

튀르키예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약관
- 계약발행자에게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소비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약관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을 보유할 권리를 계약발행자에게 부여하는 약관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발행자가 합당한 통지를 하지 않고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약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을 정해진 기간만큼 연장할 것을 약정하는 약관
-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는 실질적으로 알지 못했을 수 있는 계약 조건을 취소할 수 없으며 수락하도록 규정한 약관
- 계약발행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
- 계약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
- 계약발행자가 이행 시점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만 최종 가격이 계약 체결 시 결정된 가격에 비해 너무 높은 경우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소비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약관
- 계약발행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가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계약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약관
- 계약발행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제한하거나 특정 공식 요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약관
- 계약발행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약관
- 계약발행자가 소비자의 동의없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가 보유한 보증을 축소할 우려가 있는 약관
- 특히 소비자가 법률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중재인에게 신청하도록 요구하거나, 소비자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또는 기존 법적 질서상으로 상대방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그 밖의 구제책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약관

소비자보호법 제77조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부당한 조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약당 TRY 615(약 USD 33)의 과태료가 부과됨. 무효로 간주되는 불공정한 조항을 제외한 다른 조항과 소비자 합의는 유지됨. 참고로, 가입약관규정 제13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약정에는 특정 기간 동안 계약을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소비자보호법 제77조에 따라 각 위반에 대해 TRY 615(약 USD 33)의 과태료가 부과됨.

1-2. 운영정책

- 질문: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문화관광부는 게임 서비스에 대한 특정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즉, 위 ‘1-1. 등급분류 필요여부 (사전 및 사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의 평가 및 분류에 관한 절차 및 원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출시되는 컴퓨터 게임은 문화관광부 산하의 평가분류 위원회(“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함. 이 등록 절차의 전제 조건으로서 컴퓨터 게임도 등급을 받아야 함.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매우 제한적이며 운영 정책과 같은 기술적, 조직적 측면은 다루지 않음.

게임 서비스가 소비자 거래인만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인가 규제기관인 통상부와 광고위원회, 데이터 보호 당국도 게임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

1-3. 약관 개정

- 질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이나 규제가 있는지?
-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법 제4조
- 부연 설명: 계약 기간 중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도록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단, 계약의 자유원칙에 따라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음.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통지를 해야 하는 특별한 요건은 없으며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한 특별한 요건은 없음.

다만, 약관이 표준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잠재적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비자가 개정약관의 체크박스를 선택하도록 하여 약관의 개정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개정 사항을 알지 못했다는 등 주장을 하기 어렵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현지 로펌이 권고하였음.

1-4. 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합의

- 질문: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 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또는 이용자에 대한 고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률: TCO 제1조, 소비자보호법 제5조, 소비자 계약의 부당한 조건에 관한 규정 제5조, 가입약관 규정 제5조 및 제10조
- 부연 설명: 약관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며 계약이 체결되려면 양 당사자의 의지표시가 일치해야 함. 의지의 표현은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일 수 있음. 즉, 약관의 수용을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함. 단, 소비자가 묵시적 동의(예: “당사의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당사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과 같은 문구)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지로 충분할 수 있음.

또한 소비자보호법은 서비스 사용자/소비자에게 계약(예: 가입약관, 원격판매약관)이 체결되거나 또는 소비자가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충분하고 시기적절하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비스 제공자는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입약관, 원격판매약관 및 사전 정보 양식을 전자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 요건을 준수할 수 있음.

이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입약관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최소 12포인트 크기로 명확하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함. 또한 이러한 정보는 튀르키예어로 제공되어야 함. 즉, 원격판매규정과 가입약관규정을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정보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따라서 튀르키예어가 아닌 다른 언어(예컨대 영어)로 체결되는 약정은 튀르키예어가 공용어인 튀르키예에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임. 따라서 모든 B2C 약정은 튀르키예어로 체결되어야 함.

또한, 상업기업의 튀르키예어 의무사용에 관한 법률 제805호(법 제805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i) 튀르키예 기업은 튀르키예 기관 및 개인과의 약정, 통신, 거래 및 관계에서 튀르키예어를 사용해야 한다. (ii) 외국 기업은 튀르키예 기관 및 개인과의 통신, 거래 및 관계에서 튀르키예어를 사용해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약정서는 튀르키예 법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약정의 당사자가 튀르키예인 1인과 외국인 1인인 경우, 시장 관행과 원칙의 일반적 해석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법률 제805호의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약정”이라는 용어가 의도적으로 제외되었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된 법리가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법원은 튀르키예 당사자와 외국 당사자 간의 약정도 법 제805호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현지 로펌은 무효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튀르키예인과의 모든 약정, 기록 및 통신을 튀르키예어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음.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어 번역본이 튀르키예어 버전을 대체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무효로 간주되며, 튀르키예 법원과 당국은 관련 문서의 튀르키예어 버전에 따라 절차를 진행함.

이에 현지 로펌은 튀르키예 당사자와의 B2B 약정은 튀르키예어로 또는 이중 언어(예: 튀르키예어와 영어 또는 한국어)로 체결할 것을 권장하였음.

소비자 계약서 사본은 하드 카피 또는 영구 데이터 매체(예: 이메일)를 통해 소비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함. 실제로 기업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서비스와 조건을 수락하기 전에 화면에 표시되는 체크박스를 통해 이를 제공함. T&C는 표준계약조항이지만 이러한 조항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객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음. 따라서 현지 로펌은 T&C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고객이 주장하는 것을 어렵도록 하기 위해 체크박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하였음. 현지 로펌은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피하기 위해 계약 조건을 읽을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권장하였음.

V. 개인정보보호

튀르키예

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1-1. 개인정보 수집 방법(동의, 고지 등)

- 질문: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처리)하기 위한 방법(근거)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동의, 고지, 정보주체와의 계약 처리 및 이행을 위한 경우 등)
- 관련 법률: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98호(LPPD)의 제5조 및 제6조
- 부연 설명: LPPD의 제5조에 따라 데이터 통제자는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의 법적 근거가 필요함.
 - 명시적 동의
 -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처리(즉, 처리를 지시하는 법률)
 - 데이터 주체의 물리적 또는 법적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의 생명이나 안녕의 보호
 - 계약 이행
 - 법적 의무 준수
 - 데이터 주체에 의한 공개
 - 권리의 설정, 사용 또는 보호
 - 데이터 통제자의 정당한 이익
 - 특정 범주의 개인 데이터(예: 민감한 개인 데이터)
 - 명시적 동의
 -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처리(즉, 처리를 지시하는 법률)
 - 건강 데이터 및 성생활 데이터(민감한 데이터이기도 함)
 - 명시적 동의
 - 의료 서비스 및 예방 의학과 같이 LPPD에 나열된 제한된 목적을 위해 기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처리

데이터 통제자는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이나 수집하는 동안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한 특정 정보를 데이터 주체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통지 요건”). 통지 요건의 이행에 관한 입증 책임은 데이터 통제자에게 있음(아래 “2-3 개인정보 처리방침” 부분 참조).

튀르키예 법률에 따라 명시적 동의는 구체적이고 정보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제공되어야 함. 동의를 얻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데이터 주체에 제시하여 정보에 입각한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고지와 동의서는 별도로 작성되어야 함.

튀르키예

동의서의 내용은 무엇을 위한 동의를 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예를 들어,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동의의 경우 동의서 양식에는 데이터 제어자의 이름, 전송 목적 및 데이터 수신자가 포함되어야 함.

한편,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최소한 (i) 데이터 제어자의 신원, (ii) 처리 목적, (iii) 개인 데이터 수신자, (iv) 데이터 전송 목적, (v) 개인 데이터 수집 방법, (vi) 처리의 법적 근거 및 (vii) 데이터 주체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현지 로펌은 개인정보의 종류와 처리 목적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참조(예를 들어 링크를 통해)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명시적 동의서에 별도로 포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음.

1-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방법(동의, 고지 등)

- 질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적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근거)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동의, 고지, 정보주체와의 계약 처리 및 이행을 위한 경우 등)
- 관련 법률: LPPD 제8조
- 부연 설명: 개인정보는 위에 언급된 법적 근거에 따라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LPPD) 제6698호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sensitive personal data)는 인종, 민족, 정치적 견해, 철학적 신념, 종교적 또는 기타 신념, 복장 및 의류, 협회 회원 자격, 재단 회원 자격 또는 노동조합 회원 자격, 건강, 성생활, 범죄 기록 및 보안 조치와 관련된 개인정보로 정의됨. 2020년 1월 31일 튀르키예 데이터 보호국(DPA)은 특수 범주의 정보와 관련된 관련 조치를 상세히 명시했음([여기](#)¹⁴ 튀르키예어로 제공). 즉, 민감한 개인 정보가 (i) 전자 메일, 등록된 전자 메일 주소 또는 암호화된 전자 메일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 (ii) 물리적 CD, DVD 등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 암호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암호화 키는 (iii) 다른 서버 간에, VPN 또는 sFTP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환경에 저장해야 함. 그리고 출력본으로 전송되는 경우, 문서에 ‘기밀 문서’라고 표시해야 하며 무단 접근으로부터 문서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함.

1-3. 아동 개인정보 수집

- 질문: 한국의 경우처럼 아동(한국의 경우 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제가 존재하는지? 혹 동의가 불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적법 처리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¹⁴ <https://kvkk.gov.tr/Icerik/4110/2018-10>

튀르키예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이메일 인증, 전자서명, 서면 동의, 전화 동의 등), 위 규제가 존재하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동의 연령은? 사업자는 아동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법정 대리인이 권리행사를 대신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당 법률을 위반 했을 때 벌칙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 관련 법률: 아동 데이터 처리에 관한 DPA 지침
- 부연 설명: 명시적 동의에 따른 데이터 처리 활동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 이외의 법적 근거(예: 데이터 통제자의 정당한 이익)에 따라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단, 이 문제는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함. 예를 들어 계약의 실행 및 이행은 튀르키예 데이터보호법에 명시된 법적 근거 중 하나지만 아동의 경우 그러한 거래를 수행할 권한이 전혀 없을 수 있기 때문임.

튀르키예 데이터보호법은 명시적 동의를 얻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증 책임은 데이터 통제자에게 있음. 따라서 데이터 통제자는 물리적이든 전자적이든 명시적인 동의를 얻었음을 문서화해야 함.

튀르키예 민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개인은 아동으로 간주됨. 그러나 튀르키예 데이터보호법은 정보 주체 측면에서 아동과 성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아동과 관련된 개인 정보 처리와 관련된 특정 규정이나 요구 사항을 규정하지는 않음. 또한, 튀르키예 민법 및 튀르키예 의무법 제6098호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만 18세 미만인 사람도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특정 거래를 수행할 법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18세 미만의 정보 주체가 법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동의 법적 능력에 관한 튀르키예법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사례별로(즉, 처리되는 데이터의 성격과 범위, 정보 주체의 연령, 처리 목적 등을 고려) 평가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사례의 특수성에 따라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법원은 제한적 상황에서 15세의 미성년자에게 법적 능력을 부여할 수 있음.

튀르키예 데이터 보호 당국(DPA)은 아동 데이터와 관련하여 “상품 및 서비스 개발자”를 위한 간략한 지침을 마련했는데, 아래와 같음.

- 아동 데이터 처리 시 튀르키예 데이터보호법 준수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 데이터 최소화에 따라 아동 데이터 처리를 최소화한다.
- 아동의 인지 수준을 고려하여 공지 사항을 조정(가능한 경우 이미지 및 시각 효과로 공지 사항을 지원)한다.
- 시스템을 사용하여 아동의 연령을 확인한다.
- 아동 데이터에 대한 최고 수준의 조직적 및 기술적 조치를 구현한다.

튀르키예

- 데이터 보호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DPA는 또한 지침에서 (i) 데이터 통제자는 동의를 제어하고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령의 아동이 응답할 수 있는 질문만 할 수 있으며, (ii) 필요한 경우 데이터 통제자는 부모/법적 후견인의 확인된 연락처 정보로 통지 및 동의 승인 양식을 발송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위 내용 외에 부모/법적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동의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보장하는 조치의 설계에 대한 현지의 특정 법률 요건이나 상관행은 없음.

아동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위반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 조항은 없다. 그러나 튀르키예 데이터보호법은 (i)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즉, 통지 요건), (ii) 데이터 통제자 레지스트리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iii) 데이터 보안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iv) DPA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 아동 데이터 보호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통제자가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것임. 이 경우 법에 따라 최대 약 TRY 3백만(약 USD 150,000)의 과태료가 부과됨. 필요한 경우, DPA는 데이터 처리 및 데이터 전송의 중단을 명령할 수도 있음. 위 (iii)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데이터 제어자는 다음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방지한다.
-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한다.
- 안전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유지한다.

LPPD에 의거하여, 데이터 보안에 관한 책임 체제는 GDPR와 거의 유사함. 따라서 데이터 제어자는 데이터 보안 조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LPPD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함.

튀르키예 DPA는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직 및 기술 조치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음([여기](#)¹⁵ 튀르키예어). 이 지침에는 암호화, 방화벽, 최신 안티 바이러스 시스템, 강력한 암호, 액세스 로그, 물리적 보호 및 직원 정기 교육, 데이터 프로세서 관리, 데이터 최소화 및 데이터 보호 정책 및 절차 구현과 같은 조직적 조치와 같은 기술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1-4. 개인정보 처리위탁(동의, 고지, 수탁 업체 계약방법)

- 질문: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면, 그 적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아

¹⁵ <https://www.kvkk.gov.tr/SharedFolderServer/CMSFiles/7512d0d4-f345-41cb-bc5b-8d5cf125e3a1.pdf>

튀르키예

수행하는 자(수탁업체)와 체결해야 하는 문서가 있는지?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문서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위탁업체가 수탁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관리감독 방법은 무엇인지? 개인정보 수탁업체가 개인정보 관련 사고를 발생 시킬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수탁업체가 온전히 그 책임을 짐. 위탁업체가 그 책임을 짐 등)

- 관련 법률: LPPD 제12조

- 부연 설명: 1-2. 위탁이란 용어를 데이터 프로세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했음. 데이터 프로세서 사용에 대한 특정 동의 요건은 없음. 데이터 통제자는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위 1-3 부분의 답변 참조)가 있는 경우 데이터 프로세서를 통해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음.

3. LPPD는 튀르키예 외부 설립된 프로세서와 이에 개인 데이터를 수출하는 국내 컨트롤러 간의 계약인 경우가 아닌 한,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간의 서면 계약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그러나, DPA는 지침 및 발표를 통해 서면 계약을 강력히 권장하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간의 관계가 “데이터 처리 계약”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4. 데이터 통제자가 데이터 프로세서를 감독하도록 요구하는 명시적 조항은 없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은 공동으로 부담함. 데이터 통제자는 LPPD 준수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으므로 데이터 통제자는 데이터 프로세서의 LPPD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함.

5. LPPD는 데이터 통제자가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데이터 보안 조치에 대해서는 프로세서와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LPPD 제12(1)조). 데이터 프로세서(데이터 통제자와 함께)는 LPPD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음(LPPD 제12(4)조).

데이터 통제자는 데이터 위반 및 데이터 위반 통지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그 위반과 관련하여 데이터 프로세서의 잘못이 있는 경우 데이터 통제자는 데이터 프로세서에 대하여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1-5. 쿠키 수집

- 질문: 쿠키를 수집(동의 등) 및 이용과 관련하여 규제가 있는지 있다면, 해당 법을 만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쿠키 수집(동의 등) 방법은 무엇인지 만약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쿠키 동의가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 관련 법률: 쿠키 관행에 관한 DPA 지침

- 부연 설명: DPA는 쿠키 관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음. 현재 DPA는 비필수 쿠키를 통한 데이터 처리 시 명시적 동의(옵트인 동의)를 받을 것을 데이터 통제자에 요구하고 있음.

튀르키예

DPA는 쿠키 지침에서 동의 관행을 세부적으로 평가했음. 이에 따르면 모범사례는 “수락”, “거부” 및 “설정” 선택 항목을 모두 동일한 크기, 색상 및 포맷으로 함께 제시하는 것임. 쿠키 유형별로 수락/거부하는 옵션도 정보 주체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명시적 동의를 얻기 위해 옵트인 동의 방식을 채택해야 함. DPA는 지침을 통해 쿠키 배너에 대한 모범사례와 불량사례를 제시했음.

모범 사례는 “수락,” “거부” 및 “설정” 을 모두 동일한 크기, 색상 및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임. 쿠키 유형을 개별적으로 수락/거부하는 옵션도 정보 주체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명시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옵트인 동의 방식을 사용해야 함. 비필수 쿠키 사용에 대한 옵트인 요건 외에도 데이터 제어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함.

- 정보 주체에게 쿠키의 이름, 목적 및 기간, 쿠키가 제3자인지 제1당사자인지 여부를 포함하는 쿠키 정책을 제공한다.
- 적절한 법적 근거에 따라 쿠키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쿠키 지침은 특정 쿠키 유형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쿠키를 분류한다.
- 쿠키 관행이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을 포함하는 경우 적절한 국경 간 전송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실무 관행을 검토하기 위해 지침을 확인할 수 있음([여기¹⁶](#), 튀르키예어).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별도의 쿠키 정책과 쿠키 배너를 준비하는 것이 좋음.

2. 개인정보 처리

2-1. 개인정보 파기

- 질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어떠한 경우 파기해야 하는지,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면, 한국의 전자상거래 법,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이 별도의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이 있는지? (접속기록 3개월,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대금 결제 및 재화공급 등에 관한 기록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관련 법률: LPPD 제7조 및 개인 데이터의 삭제, 파기 또는 익명화에 관한 규정
- 부연 설명: LPPD 제7조에 따라 데이터 주체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데이터 주체의 파기 요청이 있는 경우 파기해야 함.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나 법적 보유 기간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 파기하며 데이터 통제자는 보유 및 파기 기간을 명시한 데이터 보유 및 파기 정책을 마련해야 함.

¹⁶ <https://kvkk.gov.tr/SharedFolderServer/CMSFiles/fb193dbb-b159-4221-8a7b-3addc083d33f.pdf>

튀르키예

기록의 보유에 대하여 다양한 보유 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간은 데이터 보유 및 파기 정책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또한 데이터 삭제, 파기 및 익명화에 관한 모든 프로세스 기록을 최소 3년 간 보유해야 함(기타 법적 요구사항을 위해 보관).

데이터 통제자는 6개월마다 정기 감독을 수행하고 특정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삭제, 파기, 익명화해야 함.

2-2. 장기 미 접속 계정 휴면 처리 방법

- 질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보관 해야 하는 규제가 있는지, 있다면, 휴면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비활성 계정의 파기에 관한 특정 규정은 없지만, 데이터 통제자는 데이터 최소화 원칙(LPPD 제4조) 및 LPPD 제7조(위 설명대로)에 비추어 자체 정책을 수립해야 함.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나 법적 보유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2-3. 개인정보 처리방침

- 질문: 한국의 경우 법령에 의해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음. 이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기재가 권장되는 내용이 있는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어떻게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한 규제가 있는지?
- 관련 법률: LPPD 제10조
- 부연 설명: 데이터 통제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이나 수집하는 동안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통지 요건"). 통지 요건의 이행에 관한 입증 책임은 데이터 통제자에게 있음.

개인정보 보호 통지에는 최소한 다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a) 데이터 통제자 및 그 대리인의 신원
- (b) 처리 목적
- (c) 개인정보의 수신자
- (d) 데이터 전송의 목적
- (e) 개인정보 수집 방법

튀르키예

(f)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g) 정보 주체의 권리

통지 요건은 개인정보 수집 전 또는 수집 중에 충족되어야 함. 통지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데이터 통제자에 있으므로 현지 로펌은 튀르키예의 정보 주체에게 튀르키예어로 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제공할 것을 권장하였음.

또한 개인정보 보호 통지에는 광범위이고 모호하며 불완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통지 요건과 동의 요건은 별개로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통지는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4.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 질문: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에 따라 연 1회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와 유사한 규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만약 통지 수단 (이메일, 핸드폰 번호 등)이 없다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정보주체에 대한 정기적인 통지를 요구하는 특정 규정은 없음. 그러나 정보 처리 관행이 변경되는 경우 데이터 통제자는 이를 개인정보 보호 통지에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변경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함.

2-5.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 질문: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수/매출액을 고려하여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는데 이와 유사한 규제가 있는지, 있다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면 그 사실을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만 해 두어도 되는지
- 관련 법률: LPPD 제16조 및 데이터 통제자 레지스트리에 관한 규정
- 부연 설명: 해외 데이터 통제자는 데이터 통제자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야 함. 등록의 일환으로 해외 데이터 통제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특정 책임을 지고 등록 절차(데이터 통제자 레지스트리에)를 완료할 데이터 통제자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 선임에 대한 정보를 튀르키예 DPA에 제출해야 함. 대리인은 튀르키예 국민이거나 튀르키예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함. 대리인의 정보는 데이터 통제자 레지스트리(공개적으로 이용 가능)에 게시됨. 대리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아래에 나열된 것처럼 제한적 권한을 가짐.

튀르키예

대리인은 다음 권한이 있어야 함.

- 데이터 통제자를 대신하여 DPA에서 공식 통지 및 서신을 수령
- DPA의 요청을 데이터 통제자에 전달하고 데이터 통제자의 응답을 DPA에 제출
- 정보 주체의 요청을 수신 및 전달
- 데이터 통제자를 대신하여 해당 데이터 주체에 대응
- 데이터 통제자를 대신하여 데이터 통제자 레지스트리에 대한 등록 절차를 수행하고 관리

또한 데이터 통제자 대리인의 신원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명시되어야 함.

2-6. 국외 이전 방법(동의, 방법, 동의 시 고지사항)

- 질문: 해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특별한 규제 없이 자유롭게 이전 가능 등)
- 관련 법률: LPPD 제9조
- 부연 설명: 튀르키예 법률 하에서 LPPD 및 DPA의 결정에 따른 국가 간 개인 데이터 전송에는 현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메커니즘이 있음.
 - i. 명시적 동의(LPPD 제9(1)조)
 - ii. 법적 근거 + 대상 국가의 적절한 보호(LPPD 제9(2)(a)조)
 - iii. 법적 근거 + 위탁 + DPA 승인(LPPD 제9(2)(b)조)
 - iv. 법적 근거 +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CR) + DPA 승인(LPPD의 제9(2)(b)조)

DPA는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즉, 안전한 국가)를 공표하지 않았음. 또한 제한된 수의 위탁(정확히 5개의 신청)을 승인했으며 지금까지 승인된 BCR 신청은 없음. 따라서 명시적 동의를 얻는 것이 국가 간 데이터 전송을 준수하기 위한 빠르고 실현 가능한 솔루션으로서 부각됨.

2-7.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고지, 발송 방법)

- 질문: 한국의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광고성 정보(이메일, 핸드폰 번호, 모바일 앱 푸쉬) 발송에 적용되는 규제가 있는지, 있다면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지켜야 하는 표기 의무가 있는지(제목 맨앞 (광고) 표기, 수신거부 조치, 사업자의 물리적 주소 등), 이용자에게 광고성 정보를 보내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 등)

튀르키예

-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법 제5, 6, 7조, 상업통신 및 상업전자메시지에 대한 규정 제5조(이하 “규정”)
- 부연 설명: 원칙적으로 해외 법인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목적을 위해 상업적 전자 메시지를 보내려는 경우 규정에 따라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상품 및 서비스의 판촉 또는 마케팅
- 회사 또는 사업의 홍보
- 축하 메시지를 통한 인지도/평판 제고

광고를 제작하는 주체의 신원이 보여야 함. 판촉의 경우 판촉의 기준과 조건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함.

동의 요건 외에도 수신자에게 상업적 정보를 보내는 서비스 제공자는 규정에 따라 상업적 전자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전자메시지관리시스템(예: IYS)이라는 시스템에 등록하고, 개인으로부터 얻은 동의를 IYS로 이전해야 함. 이 시스템은 수신자가 불만을 제기하고 이전에 제공한 동의의 제공 또는 철회가 가능하게 함.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IYS에 동의가 업로드되지 않은 고객에게 마케팅 정보를 보내는 것을 중단해야 함.

다만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이용자에게 송신하는 경우 제목에 (광고) 표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규정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음.

2-8. 데이터 국지화

- 질문: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현지에서 저장해야 한다는 현지화 규제가 있는지, 있다면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있는지? (모든 개인정보, 특정 정보만 현지에서 저장 등)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일반적인 데이터 국지화 요건은 없음. 그러나 특히 은행, 결제 공급자, 전자 통신, 의료와 같은 중요한 기반 시설 서비스의 경우 부문별 국지화 요건이 있음. 단, 게임 회사가 튀르키예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튀르키예에 저장하도록 요구하는 부문별 특정 법률은 없음.

2-9.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가능성

- 질문: 자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사업자에게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률이 적용되는지?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튀르키예

- 부연 설명: LPPD는 애플리케이션이 튀르키예 외부의 데이터 통제자 또는 프로세서로 확장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음. 그러나 행정법규(secondary legislation) 튀르키예 외부에 위치한 데이터 통제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통제자 레지스트리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 또는 튀르키예의 데이터 통제자 대리인을 임명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DPA는 튀르키예의 정보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튀르키예 외부에 위치한 데이터 통제자에 제재를 가한 바 있음.

3. 개인정보보호

3-1. 이용자 개인정보 권익 보호 방법

- 질문: 이용자에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 개인정보 관련 권리가 있는지(열람권, 정정권, 이동권, 처리정지권, 삭제권), 있다면 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지?(무제한으로 행사가능,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제한 가능 등)
- 관련 법률: LPPD 제11조
- 부연 설명: LPPD에 따라 데이터 주체는 데이터 통제자에 다음을 신청할 수 있음.

- (a) 개인 데이터가 처리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 (b)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정보 요청
- (c) 데이터 처리의 목적과 데이터가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 (d) 데이터가 전송되는 제3자(튀르키예 또는 해외)에 대한 정보 제공
- (e)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데이터의 수정 요청
- (f) 데이터 삭제 또는 파기 요청
- (g) 데이터의 수정/삭제/파기가 해당 데이터가 전송되는 제3자에게 전달되도록 요청
- (h) 자동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 (i) 불법적인 데이터 처리의 결과로 발생한 자신의 손해에 대한 보상 요청

데이터 통제자는 데이터 주체에게 위 권리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예: 개인정보 보호 통지).

데이터 통제자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신청할 때 정보 주체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이름, 성 및 서명(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튀르키예

- 튀르키예 국민의 경우 튀르키예 신분증 번호,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및 국적 정보(ID 번호(있는 경우))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
- 통지를 위한 이메일 주소, 전화 또는 세금 번호
- 요청 주제

정보 주체에게 답할 때 데이터 통제자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신청자의 이름과 성
- 튀르키예 신분증 번호(튀르키예 국민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및 신분증 번호(외국인의 경우)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
- 통지를 위한 이메일 주소, 전화 또는 세금 번호
- 요청 주제
- 요청에 대한 데이터 통제자의 설명

데이터 통제자는 정보 주체의 요청에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30일 이내에 무료로 답해야 함.

3-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상보험 요건

- 질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사고(유출, 노출, 훼손, 분실 등)가 발생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고지 의무가 있다면 몇명 이상의 개인정보 사고 시 그러한 의무가 부과되는지, 고지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지(홈페이지에 사고 사실 공개, 개별 연락 (이메일, 전화 등)),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경우 고지 시간이 규정되어 있는지 (사고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1주일 이내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사고(유출, 노출, 훼손, 분실 등)가 발생할 경우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신고 의무가 있다면 몇명 이상의 개인정보 사고 시 그러한 의무가 부과되는지,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사고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1주일 이내 등)
- 관련 법률: LPPD 제12조
- 부연 설명: 데이터 유출 발생 시, 데이터 통제자는 유출의 영향, 위험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데이터 주체에게 통지해야 함.

의무가 발생되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사고 건수는 없음. 위에서 언급했듯이 데이터 유출은 위험 수준에 관계없이 정보 주체에게 통지되어야 함. 2019년 9월 18일자 DPA 판결번호2019/271에 따라,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는 명확하고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함.

튀르키예

- 유출 시간
- 유출의 영향을 받는 데이터 범주
- 잠재적 영향
- 유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취했거나 취하도록 권장하는 조치
- 데이터 주체가 데이터 유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 정보, 데이터 통제자의 웹사이트, 콜센터 또는 기타 소통 수단

DPA는 데이터 주체에게 유출을 통지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실제로 데이터 통제자는 정보 주체의 연락처 주소를 사용하거나 데이터 통제자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과 같은 기타 적절한 방법(영향받는 사용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으로 유출 사실을 알림.

DPA는 데이터 통제자가 영향을 받는 데이터 주체를 식별한 후 데이터 통제자가 합당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데이터 주체에 통지할 것을 기대함.

데이터 통제자는 영향, 위험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DPA 및 관련 정보 주체에 통지해야 함.

통지 의무가 발생되기 위한 최소한의 건수는 없음. 따라서 데이터 유출을 인지한 데이터 통제자는 부당한 지연 없이,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DPA에 데이터 유출을 통지해야 함. 데이터 통제자는 튀르키예어 및 영어로 제공되는 공식 웹사이트에 DPA가 게시한 표준 “데이터 유출 통지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이용 가능하고 DPA가 요구한 채널을 통해 이 양식을 제출함. 온라인 공시 시스템을 통해 DPA에 통지하는 것도 가능함.

3-3. 데이터 침해에 대한 보상

- 질문: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와 유사한 규제가 있는지?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개인정보 보험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없음. 단, 튀르키예 데이터보호법 제12/1조에 따라 데이터 통제자는 개인정보의 불법 처리 및 액세스를 예방하고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및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함. 튀르키예 데이터보호법 제14/3조에 따라,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처리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튀르키예

3-4.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보험

- 질문: 개인정보 규제(법령)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 된 경우 과태료, 과징금 등은 최대 얼마까지 부과되는지?
- 관련 법률: LPPD 제18조
- 부연 설명: 튀르키예 데이터보호법은 여러 의무 위반에 대해 각기 다른 처벌을 부과함. 이 벌금은 최대 TRY 2,678,863(약 USD 145,000)에 이를 수 있음.

VI. 기타 분류

1. 게임 관련 법령/규정

1-1. 게임법 유무

- 질문: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이 게임만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이 있는지, 게임을 소관하는 주무부처는 어디인지?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게임 산업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규정이나 법률은 없음. 특정 감독 기관은 없으나 게임 회사는 주제에 따라 여러 당국의 감독을 받음(예: 문화관광부, 정보기술통신 당국, 통상부, 튀르키예 데이터 보호 당국 등).

1-2. 게임 산업 관련 규정

- 질문: 게임법이 없는 경우 타 법령에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 또는 규정이 있는지, 타 법령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소관하는 소관기관은 어디인지?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게임 서비스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 게임 서비스에 전자 상거래 구성요소가 포함된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데이터 처리 활동의 경우 튀르키예 데이터보호법이 적용되며 콘텐츠 제공자에게는 인터넷법 제5651호가 적용됨. 일반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는 정보기술통신 당국(tr. BTK)의 관할임.

1-3. P2E 게임 관련 규정 유무

- 질문: 게임 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한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 관련 법률: 결제 시 암호화 자산 미사용에 관한 규정
- 부연 설명: 결제 시 암호화 자산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음. 위 규정에 따라 튀르키예에서는 직간접적인 결제에 암호화 자산을 사용할 수 없음.

1-4. NFT 거래 관련 규정 유무

- 질문: NFT 거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튀르키예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NFT 거래에 대한 규정은 없음. NFT는 튀르키예 법상 특별히 규제되지 않으나, 결제 시 암호화 자산 미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암호화 자산의 유형으로 정의됨¹⁷. 따라서 규정에 따라 암호화 자산에 적용되는 제한이 NFT에도 적용될 수 있음.

2. 경품 이벤트

2-1. 관련 법령

- 질문: 게임의 결과 또는 기타 게임의 이벤트 등을 통해 인게임 아이템이 아닌 현물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경품의 가액 등을 제한해 놓은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 관련 법률: 복권 규정 제2/1-f조
- 부연 설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의 가치를 제한하는 구체적 규정은 없음. 단, 복권 규정 제2/1-f조에 따라 복권법은 많은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복권법에 따라 경품 자금이 일정 한도 미만인 조직이 포함됨. 2022년의 경우 이 한도는 TRY 210(약 USD 12)임. 즉, 실제로 GDNL은 활동이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함. GDNL은 해당 활동이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림.

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3-1. 국내 대리인 지정

- 질문: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튀르키예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게임 부문의 특정 요구사항은 없다. 관련 요구 사항은 등급 섹션 및 개인정보 섹션에 대한 답변 참조.

3-2. 법인설립 의무

¹⁷ 암호화 자산은 (i) 분산 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가상으로 생성되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되며, (ii) 명목화폐, 등록 통화, 전자화폐("e-money"), 지불 수단, 보안 또는 기타 자본시장의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 자산으로 정의된다.

튀르키예

- 질문: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위의 답변 참조.

3-3. 서버설치 의무

- 질문: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로컬 서버 요구 사항은 없지만,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규칙을 준수해야 함.

4. 외국인 투자 제한

4-1. 외국인 투자 제한 관련

- 질문: 게임산업이 외국인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게임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는 제한이 없음. 현지 법률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한국 기업은 튀르키예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음. 또한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 실제로 튀르키예에는 R&D,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술개발구역이 설치되어 있음.

튀르키예

4-2.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 질문: 게임산업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지?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게임 산업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한국 기업은 튀르키예로 확장하고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3. 외국인의 국내 진출

- 질문: 외국인이 게임 산업에 진출 가능한지?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위 4-2 부분 참조.

5. 기타

5-1. 서비스 허가증(콘텐츠 제공시 승인사항)

- 질문: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 현지 게임 출시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증명서, 허가증 등이 있는지?(예, 중국의 경우 판호 발급이 필수임)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국내(튀르키예) 또는 해외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특정 서비스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님.

5-2.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 질문: 게임산업 관련 세액공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또는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있는지?
- 관련 법률: 게임 산업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나 보조금은 없다. 그러나 게임 회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기술 회사에 적용되는 몇 가지 인센티브가 있음.

게임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음. (i)소득세법 제193호 제89조 및 법인소득세법 제5520호 제10조에 규정된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법인소득/소득세 부분 면제, (ii) 기술개발구역에 관한 법률 제4691호 제2-2조에

명시된 기술개발구역에 설립 및 운영되는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iii) R&D 활동만을 위해 R&D 센터를 설립한 회사에 대해 제공되는 인센티브, (iv) 소득세법 제23조 및 VAT법에 따라 제공되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인센티브 등.

- 부연 설명: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르면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독자적 기술 전문가는 해당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해외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음. 마찬가지로, 법인소득세법 제10조에 따라 법인소득세 납세자는 (i) 해외에서 혜택을 받고, (ii) 해외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창출한 소득의 50%를 법인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기술개발구역(TDZ)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기술개발구역에 설립되어 운영되는 회사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됨.

- i. 법인소득세 면제 해당 구역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R&D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정 기간 동안 법인소득세가 면제됨.
- ii. 원천징수 면제 TDZ는 해당 구역에 고용된 R&D, 디자인 및 지원 인력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해당 구역에서 수행되는 TDZ 활동에 대해서만 적용됨. 단, 지원인력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한도는 연구개발 및 디자인 인력 총수의 10%에 해당하며 면제는 모든 R&D 및 디자인 인력에 적용됨.
- iii. VAT 면제 TDZ에서 생산된 시스템 관리, 데이터 관리,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부문별, 인터넷, 게임, 모바일 및 군사 명령 제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배송 및 서비스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VAT가 면제됨.
- iv. 보험료 지원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액의 50%는 재무부 예산으로 충당됨.
- v. 인지세 및 수수료 면제 (i) R&D, 혁신 및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해 수입된 상품 및 (ii) 원천징수세 면제 범위 내의 급여와 관련하여 발급된 문서에는 인지세가 면제됨.
- vi. 관세 면제 R&D, 혁신 및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해 수입되는 상품에는 관세가 면제됨.

R&D 센터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R&D 센터에서 수행되는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됨.

- i. R&D 및 혁신 비용 공제 R&D 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R&D 및 혁신 비용은 기업 소득 식별 시 공제가능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 ii. 원천세 면제 R&D 센터에서 근무하는 R&D 및 지원 인력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부분적으로 면제됨.
- iii. 보험료 지원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액의 50%는 재무부 예산으로 충당됨.
- iv. 인지세 면제 R&D법에 따라 R&D 및 혁신 활동과 관련하여 발행된 모든

문서(R&D 인력 급여 지급명세서 포함)에는 인지세가 면제됨.

v. 관세 면제 R&D 및 혁신 연구에 활용될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은 관세 및 각종 자금이 면제되며, 이 범위 내에서 발행된 서류 및 거래에 대해서도 인지세 및 수수료가 면제됨.

연락사무소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연락사무소는 어떠한 상업적 활동도 하지 않고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모회사를 대표하는 기업 구조다. 연락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인센티브가 적용됨.

i. 소득세 면제 소득세법 제23/14-a조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주가 직원에게 외화로 지급한 급여에는 소득세가 면제됨.

ii. VAT 면제 연락사무소는 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튀르키예 공급업체로부터 서비스(사무실 임대, 자동차 임대 등) 구매와 관련하여 지불한 VAT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VAT 목적으로 세무서에 등록하지 않음.

5-3. 게임 개발자에 대한 이민 지원 정책

- 질문: 게임개발자 등 기술자가 해당 국가 이주시(‘기술이민’)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예시) 취업비자 신속처리,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 부연 설명: 게임 개발자를 위한 이민 정책.

튀르키예 이민법에 따른 게임 개발자에 대한 이민 기회와 지원 정책은 없음. 그러므로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함.

외국인이 튀르키예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취업허가는 “종속 취업허가(dependent work permit)”이고 이러한 유형의 취업허가를 받으려면 튀르키예 고용 법인이 외국인 개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취업허가를 확보해야 함.

자주 발급되지 않고 실제로 접한 적도 없지만 독자적으로 일하는 외국인을 위한 또 다른 유형의 취업허가, 즉 독립 취업허가도 있음. 단, 독립 취업허가 요청은 현재 노동부에서 승인(즉, 부여)하지 않고 있음.

종속 취업허가는 외국인이 특정 직장이나 기업 및 특정 직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 1년 간 부여됨. 법적으로 유효한 1년의 노동 기간이 만료된 후 이 취업허가는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연장될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

취업비자의 신속 처리, 자녀 교육 및 의료비 지원

튀르키예

원칙적으로 취업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는 노동부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현재는 노동부의 업무량으로 인해 최대 4~8주가 소요될 수 있음. 신청자와 고용주가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과정과 취업비자 및 취업허가 신청에 대한 평가 과정을 고려하여 프로세스는 총 2개월 반까지 소요될 수 있음.

고용주는 취업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한 외국인을 30일 이내에 사회보장기관에 등록해야 함(튀르키예 내에서 취업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30일 기간은 취업허가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시작). 보험이 시작되면 직원과 그 가족은 공중보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의료 서비스 및 그 조건은 법률 제 5510호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보장 범위는 특정 의료 서비스의 연령 제한, 계약된 의료 제공자 중 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특정 추가 조건에 따라 달라짐.

자녀가 학교(예: 초등 및 중등 교육)에 등록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이 최소 6개월 간 유효한 취업허가 또는 거주허가를 소지해야 함. 모든 공립학교의 교육은 무료임. 고등학교(예: 과학 고등학교, 사회과학 고등학교, 아나톨리아 고등학교, 아나톨리아 종교 직업학교 또는 직업 및 기술 아나톨리아 고등학교)에 등록하려면 자녀가 시험에 응시해야 함. 대학 교육의 경우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 요건을 충족하면 튀르키예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음.

5-4. 장애인에 대한 게임 서비스 관련 정책

- 질문: 게임 관련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 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 관련 법률: 별도 규정 없음.
- 부연 설명: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송 서비스 접근성 개선 원칙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게 장애 접근에 대한 특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회사에 적용되는 특정 규정은 없음.

5-5. 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정책

- 질문: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및 게임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 관련 법률: 지적 및 예술 저작물에 관한 법률 제5846호("IPL") 외에 불법 게임 프로그램 또는 게임 저작권 침해에 관한 특정 규정/법률은 없음.

<https://www.telifhaklari.gov.tr/resources/uploads/2015/10/26/Law%20on%20Intellectual%20and%20Artistic%20Works%20No.5846.pdf>

- 부연 설명: 게임은 IPL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불법 게임 프로그램 또는 게임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다른 특별한 규정/법률은 없음. 따라서 게임은 일반 저작권 조항에 따라 보호됨.

컴퓨터 게임의 저작권자는 제14조와 제17조 사이에 규정된 저작인격권과 제21조와 제25조 사이에 규정된 경제권에 대한 자격이 있음.

저작인격권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저작물에 대한 수정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임. 반면에 저작재산권은 각색, 복제, 배포 및 실연에 대한 권리와 기호, 소리 및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리임.

저작권법 제70조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저작권법 제68조는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권리를 부여 받은 경우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저작권 특별 보상을 예고하고 있음. 즉, 저작물의 소유자는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또는 저작물의 공정시장가치의 최대 3배까지 청구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IPL 제71조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예고하고 있음.

한편, 불법 사설 서버에 적용되는 차단 절차는 없음. 다만 차단 절차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해 외국 기관이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가 있음.

1) 게임은 지적 및 예술 작품에 관한 튀르키예 법 제5846호(“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으므로 첫 번째 대안은 저작권법을 활용하는 것임. 저작권법 제71조에 따르면,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권 침해자는 벌금형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제71조에 명시된 범죄의 수사와 기소는 고소 대상이 됨. 고소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저작권 보유자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다른 증거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함. 저작권 보유자는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함. 이러한 서류와 증거가 고소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불기소 결정이 내려짐.

2) 두 번째 대안은 인터넷 출판물의 규제 및 그러한 출판물의 의한 범죄 퇴치에 관한 법률 제5651호(“인터넷법”)을 활용하는 것임. 인터넷법 제9조에 따라 인터넷에 방송되는 콘텐츠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및 법인, 기관, 단체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신청하거나, 콘텐츠 제공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호스팅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공지 및 테이크다운 방법을 사용하여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또는, 중재를 위한 형사재판(criminal judge of peace)을 통해 신청하여 콘텐츠 삭제 및/또는 접근 차단을 요청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판사는 해당 콘텐츠 삭제 및/또는 접근

튀르키예

차단을 결정할 수 있음. 판사의 콘텐츠 삭제 및/또는 접근 차단 결정은 액세스 제공자 협회에서 실행함. 마지막으로, 중재를 위한 형사재판의 판결을 적시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콘텐츠, 호스팅 및 액세스자는 벌금형에 처해짐.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A Study on global game policies and laws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한국게임산업협회

감수 | 송진(정책본부본부장)

박혁태(산업정책팀 팀장)

연구총괄 | 김현수(산업정책팀 책임연구원)

수행기관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연구책임 | 김태균(변호사)

발행인 | 조현래(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발행일 | 2023년 2월 27일

발행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빛가람동 351)

전화 | 1566-1114

홈페이지 | www.kocca.kr

기관번호_KOCCA 22-39

ISBN_979-11-6677-129-3(93600)(비매품)

*본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에 게재되는 보고서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콘텐츠종합지원센터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1566-1114”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